제2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
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2020.2.13(목)11:00

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전 문 위 원

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자 : 고령군수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 및 「고령군의회 회의규칙」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**군의회**의 **승인**을 득하고자 함.

3. 예산현황

□ 세입·세출 예산안<총괄>

(단위:천원)

구 분	제1회 추경	2020년 본예산	비교증감	증감율(%)
합 계	341,804,000	341,308,000	496,000	0.15%
일 반 회 계	327,451,000	326,415,000	1,036,000	0.32%
특 별 회 계	14,353,000	14,893,000	△540,000	△3.63%
상 수 도 사 업	5,259,000	5,854,000	△595,000	△10.16%
수 계 기 금	4,485,000	4,485,000	0	0.00%
의 료 보 호 기 금	746,000	702,000	44,000	6.27%
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	80,000	80,000	0	0.00%
치 수 사 업	3,782,000	3,771,000	11,000	0.29%
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	1,000	1,000	0	0.00%

○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3,418억 400만원 으로 본예산 대비 4억 9,600만원(0.15%)이 증액 편성되었음.

◂ 일반회계는 3,274억 5,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3,600만원(0.32%)이 증액 되었으며,

◂ 특별회계는 143억 5,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4,000만원(△3.63%)이 감액되었음.

□ 세입·세출 예산안<일반회계>

(단위:천원)

구 분		제1회 추경	2020년 본예산	비교증감	증감율(%)
계		327,451,000	326,415,000	1,036,000	0.32%
세입예산	지방세수입	28,583,000	28,583,000	0	0.00%
	세외수입	9,701,316	9,603,951	97,365	1.01%
	지방교부세	147,390,000	146,990,000	400,000	0.27%
	조정교부금등	6,000,000	6,000,000	0	0.00%
	보조금	113,228,884	112,690,249	538,635	0.48%
	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	22,547,800	22,547,800	0	0.00%
계		327,451,000	326,415,000	1,036,000	0.32%
세출예산	일반공공행정	20,061,355	19,781,845	279,510	1.41%
	공공질서및안전	7,910,589	7,792,145	118,444	1.52%
	교육	3,349,729	3,349,729	0	0.00%
	문화및관광	30,701,669	30,235,684	465,985	1.54%
	환경	37,053,036	37,212,476	△159,440	△0.43%
	사회복지	69,250,809	68,509,852	740,957	1.08%
	보건	5,045,304	4,853,350	191,954	3.96%
	농림해양수산	54,578,837	54,021,552	557,285	1.03%
	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	7,674,339	7,477,496	196,843	2.63%
	교통및물류	15,099,100	14,860,400	238,700	1.61%
	국토및지역개발	14,985,292	14,466,292	519,000	3.59%
	예비비	2,292,969	4,372,508	△2,079,539	△47.56%
	기타	59,447,972	59,481,671	△33,699	△0.06%

○ 세입예산

지방세수입 286억원, 세외수입 97억원, 지방교부세 1,474억원, 조정교부금 등 60억원, 보조금 1,132억원,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5억원 임.

○ 세출예산

일반공공행정 부문 201억원, 공공질서 및 안전 79억원, 교육 33억원, 문화및관광 307억원, 환경 371억원, 사회복지 692억원, 보건 50억원, 농림해양수산 546억원, 산업·중소기업및에너지 77억원,

교통 및 물류 151억원, 국토 및 지역개발 150억원, 예비비 23억원, 기타 594억원으로 편성 되어 있음.

□ 세입·세출 예산안 <특별회계>

(단위:천원)

구 분		제1회 추경	2020년 본예산	비교증감	증감율(%)
계		14,353,000	14,893,000	△540,000	△3.63%
세입예산	세외수입	2,984,005	2,984,284	△279	△0.01%
	보조금	6,406,719	6,406,719	0	0.00%
	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	4,962,276	5,501,997	△539,721	△9.81%
계		14,353,000	14,893,000	△540,000	△3.63%
세출예산	일반공공행정	0	0	0	0
	공공질서및안전	0	0	0	0
	환경	9,744,000	10,339,000	△595,000	△5.75%
	사회복지	758,000	714,000	44,000	6.16%
	국토및지역개발	3,674,000	3,663,000	11,000	0.30%
	기타	177,000	177,000	0	0.00%

○ 세입예산

세외수입 30억원, 보조금 64억원,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0억원 임.

○ 세출예산

환경 97억원, 사회복지 8억원, 국토및지역 개발 37억원, 기타 2억원 으로 편성되어 있음.

4. 종합 검토의견

□ 예산규모

-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규모는 본예산 3,413억 800만원 대비 4억 9,600만원이 증액된 3,418억 400만원으로 0.15% 증액 편성되었습니다.
- 일반회계는 3,274억 5,100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10억 3,600만원 (0.32%)이 증액 되었으며,
- 특별회계는 143억 5,300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5억4,000만원 (△3.63%)이 감액되었습니다.

□ 세입예산 입니다

○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

3,274억 5,100만원이며 본예산 3,264억 1,500만원 대비 10억 3,600만원(0.32%)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.

- 자체수입인 지방세, 세외수입 은

382억 8,432만원이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증액이 되어 전년도 대비 9,73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.

- 의존수입인 교부세,조정교부금, 보조금은

2,666억 1,888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9억 3,86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.

- 본예산 대비 지방교부세가 4억, 보조금이 5억 3,863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.

(국고보조금 3억 4,335만원, 도비 보조금 1억 9,528만원)

• **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**

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.

○ **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.**

143억 5,300만원이며 본예산 148억 9,300만원 대비 5억 4,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.

(보전수압등및내부거래에서 5억 3,972만원이 감액)

□ 세출예산입니다.

○ **일반회계 세출예산은**

• 인건비가 3억 2,896만원, 물건비가 1억 536만원, 경상이전이 8억 2,463만원, 자본지출이 18억 340만원이 증액되고

• 내부거래가 5억 6,756만원, 예비비및기타가 14억 5,88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.

○ **특별회계 세출예산은**

• 물건비가 1,120만원, 경상이전이 1,644만원, 자본지출이 6억원이 증액되고

• 예비비및기타가 11억 6,764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.

○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

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 정리 등 꼭 필요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과 특별교부세 외에는 증가액이 거의 없으며, 이번 1회추경 재원은 예비비 감액분으로 편성한 것으로 자체재원을 확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

○ 세출분야는 코로나 바이러스, 일자리 창출, 법적인 계획수립 및 시책발굴을 위한 용역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나
예산과목 변경, 사업계획변경, 군비추가부담금 증가분은
당초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끝으로 예년에 비해 1회 추경예산 규모가 적지만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5. 참고자료(관련법령 및 관련근거)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3장(예산)

○ 「고령군의회 회의규칙」 제61조(예산안 심의)